

목적물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동산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간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신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간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3천만원	5년/5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3천만원	5년/5년
시설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간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신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간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3억원	5년/5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실손보상	3억원	5년/5년
재물기타	화재배상책임 II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 계약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대인 1억원 (대인 : 1사고당무한) 대물 10억원	5년/5년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화재, 폭발/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을 저해되어 생긴 실제손해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약정복구기간 : 2개월)	20만원	5년/5년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1인당 8천만원 1사고당 대물 3억원	5년/5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제외) (자기부담금 : 10만원)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5년/5년
	주차장배상책임(대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50 만원)	1인당 2천만원 1사고당 1억원	5년/5년
	주차장배상책임(대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50 만원)	1억원	5년/5년

과
한
조
건



담보별 상세 내용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1일이상, 약정복구기간 : 2개월)
 [가스사고배상책임] LNG(도시가스) 1인당 8천만원 1사고당 대물 3억원 / 일반공장 / 저장위치:지상 / 방호벽:LNG용 / 용량:2000.00톤/천㎡ / 면적(㎡):596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책임)] 업종:교회, 성당, 사찰 : ㎡당 / 1485㎡ / 시설물배상책임_자기부담금:10만원
 [주차장배상책임(대인)] 자기부담금:50만원 / 옥내주차장면적(평수):15 / 옥내주차장면적(㎡):52 / 옥외주차장면적(㎡):143 / 옥외주차장면적(평수):43 / 주차장배상책임대인보상유형코드:1인당 2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주차장배상책임(대물)] 자기부담금:50만원 / 옥내주차장면적(평수):15 / 옥내주차장면적(㎡):52 / 옥외주차장면적(㎡):143 / 옥외주차장면적(평수):43 / 주차장배상책임대물보상유형코드:1사고당 1억원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p>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p> <p>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탑승 포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p> <p>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p>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p>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p>
실손담보 보험 계약정보 확인	<p>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p> <p>①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담보 계약정보 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p> <p>-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p>
화재보험관련 사항	<p>화재(벽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
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 II 단독 가입시 유의 사항	<p>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 II 단독 가입시 유의 사항 : '화재배상책임 II 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p>
예상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p>위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3-01-05 현재 연 "1.7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만기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부
 례
 권



구분	내용
<p>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p>	<p>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p> <p>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p> <p>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하여 계약내용 변경일 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p>
<p>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p>	<p>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관련 서면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로 확인전화를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p>
<p>갱신계약에 관한 사항</p>	<p>■ 1종 : 해당사항 없음 ■ 2종</p> <p>가)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p> <p>1)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해당담보 갱신주기(3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p> <p>2)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 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p> <p>3) 갱신시 보험료 통보</p> <p>-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p> <p>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p> <p>-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갱신주기(3년)동안 적용합니다.</p> <p>다)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p> <p>-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p> <p>라) 보험료 납입방법</p> <p>-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p>
<p>자필서명</p>	<p>청약서 주요 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을 음성녹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p>
<p>예금자보호법</p>	<p>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시</p>	<p>고객님의 원활한 계약관리와 보상을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보험증권발행사항</p>	<p>본 보험증권은 2023년01월05일 창원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발행 당시 상태는 (정상) 입니다. (207988620230105113431)</p>
<p>모집지점</p>	<p>모집지점 : 창원지점(☎055-213-8400) 영업담당자 : 엔에스프로보험대리점(서남실)(☎010-9334-5704) RQ23-00455200 고유번호 : 20081066060003</p>

과
인
권




*** 고객자필서명**

※ 아래 서명은 고객님께서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한 이미지입니다. 본인의 서명이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파트(02-690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미지는 청약서의 자필서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증권에만 표기됩니다. 계약 변경 이후 증권 재발행한 경우에는 서명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	성명	서명	구분(관계)	성명	서명
계약자	기독교대안마니님의 성외 서울남부교회				

<법정대리인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 1인으로서 동행으로 권권을 행사합니다.
 ※ 약정년차(청약자/특별원자) 청약의 경우, 법정대리인 1인 서명시 추가서명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전권자가 서명하고,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후 전권자가 서명하시게 바랍니다.


*** KB손해보험 대표앱으로 보험금 청구를 쉽고 간편하게!**




먼저 KB손해보험 앱에 접속해 주세요.



앱 화면 하단에서 '보험금 청구'를 누르고



'내용 입력'후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KB손해보험 대표앱]을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모바일 약관



포인포인